

「한국은행 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기준」 주요 개정 내용

I 개정 취지

- 금융중개지원대출 **한도 유보분 한시 특별지원**(2024.1.11일 금통위 의결)의 **지원제외대상 업종 관련 기준**을 우리 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**운용 기준**에 반영하여 제도 운용의 **통일성**을 확보

II 주요 개정 내용

- (지원제외업종 조정) 중소기업 지원자금 **지원제외대상 업종**을 본부의 **한도 유보분 특별지원 세부 시행방안**을 반영하여 조정
 - 지원제외대상 업종은 아래 표와 같이 조정

지원제외대상 업종 조정

추가 업종	삭제 업종
52915 주차장 운영업	7512 인력공급업
855 일반 교습학원	91223 노래연습장 운영업
9112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	
96129 체형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	

- **복수 업종** 영위 시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4조에 따른 **주된 업종**을 **기준**으로 판정

III 시행일 및 경과조치

- **시행일** : 2024. 2. 1일

- 시행일 전 취급되어 지원 중인 대출은 종전의 기준을 적용하며, 시행일 기준 미지원 대출은 새로운 기준을 적용*

* 지원신청 사례별로 적용되는 운용기준 규정은 아래 표 참조

지원신청 사례별 운용기준 적용례

	지원신청 사례	적용 규정 및 적용례
①	2024.2월 이후 신규취급	개정 규정 적용
②	2024.1월 이전 취급되었으나 우리 본부 자금지원 미신청	개정 규정 적용 → 부동산업 등이 주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2024.2월부터 지원 신청 가능 → TCB, 특허·실용신안권 등 현행 규정상 부적격한 종전 대출은 2024.2월부터 지원신청 불가능 → 2023.11월 이전 취급된 만기 1년 초과 시설자금대출도 2024.2월 신청분부터는 지원기간을 1년 단위로만 인정* * 우리 본부 자금 기지원 대출의 지원기간은 3년 이내 만기까지로 일괄 연장 조치
③	2024.1월 이전 취급되었고 우리 본부 자금을 지원받음	종전 규정 적용